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입소이용자 :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 대상자 1~5등급	
입소절차 및 필요서류	① 일반대상자 : 입소상담 -> 건강검진(결핵 포함 감염병 검사 등) -> 입소 ② 기초생활수급자 : 입소상담 -> 주소지행정기관에 입소신청 -> 건강검진(결핵 포함 감염병 검사 등) -> 행정기관에서 시설로 시설 입소이용 의뢰서 발송 -> 입소 ③ 필요서류 :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(복사본 가능)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복사본 가능), 가족관계 증명서, 의사소견서(질환 관련), 처방전(복용약 관련), 결핵 포함 감염병 검사 결과지.
계약기간 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	
입소계약 및 비용부담	① 계약기간은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하고, 기간의 갱신 또는 등급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될 시 재계약 실행. ② 월이용료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식재료비, 상급침실료) 등의 부담액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. ③ 입소자의 병원진료 등 의료비 및 개별요구에 의한 물품 구입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
계약의 해제 :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	
계약의 해지	① 입소자의 시설 부적응,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해지. 다만,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 후 시행. ② 입소자의 상습적인 욕설,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,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진행. ③ 그 밖의 보호자의 요청 및 건강등의 이유로 타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후 시행.



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
우리요양원